

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불합리한 배상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규정된 시장 시설기준과 일치하여 혼란을 방지 (안 제3조)
- 나. 자의적 배상기준 규정 삭제(안 제14조)
- 다.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(안 제16조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,
「유통산업발전법」, 「민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전단 중 “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조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4조에 의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라”를 “이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개설한다.”를 “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정기시장은 대지가”를 “면적은”으로 하고, “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”를 “시장에게 신고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 개설자가 시장일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[별표1]과”를 “별표1 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, 제5조제3항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용기간내”를 “사용기간 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한다)는[별표2]”를 “한다)는 별표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5호 전단 중 “사용기간내에”를 “사용기간 내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하여는[별표2]”를 “대하여는 별표2”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사용료의 환급)”을 “(사용료의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천재지변,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시장 사용을 해지한 경우

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며,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신청을 시장에게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 운영에관한조례	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가 개설 하였으나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 다)의 운영,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 조례는 「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」 제3조 및 「유통산업발전 법」 제14조에 의거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정기시장" 이라함은 일정 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 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 다. 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 1. ----- 이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개설 및 시설기준) ① 시장 은 구미시장이 개설한다.	제3조(개설 및 시설기준) ① ---- ----- 직접 개설하거 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 다.
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	② -----

호와 같다.

1. 정기시장은 대지가 1,000제곱
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임시시
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
이상이어야 한다. <후단 신
설>

2. (생략)

제4조(명칭과 위치) 시장의 명칭
과 위치는 [별표1]과 같다.

제5조(사용허가) ① (생략)

②월 또는 연액으로서 사용료를
납부하게 되는 시장의 사용허가
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
신청서에 제8조에서 규정한 사
용보증금을 구미시 금고에 납입
하고 그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.

그러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
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의 납입업
무를 감면 또는 연기할 수 있다.

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
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
하여야 한다.

④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
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
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각 호와 -----.

1. 면적은 -----
----- 시
장에게 신고하여야 -----
-----. 단 개
설자가 시장일 경우 신고를
생략할 수 있다.

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명칭과 위치) -----
----- 별표1 과 -----.

제5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③ ----- 각 호의 -----

-----.

④ ----- 사용기간 내 --

⑤ (생략)

제6조(사용료)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[별표2]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.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

6. (생략)

④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(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하는 자에 대하여는 [별표2]의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.

제8조(사용 보증금) 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보증금은 점포의 위

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료) ① -----
----- 한다)는
별표2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사용기간 내에 -

-----.
-----.

6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대하여는 별
표2 -----
-----.

<삭제>

치와 종류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.

③시장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때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.

다만,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 및 제13조 및 제15조의 부담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.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계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3조(설비의 변경금지) ① (생략)

②제1항의 부담금은 시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) ① ----- 각 호의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3조(설비의 변경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[illegible]

관계법령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(시장의 특성별 육성)

-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, 개설 주기 및 주체,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, 개설, 관리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(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)

- 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0.6.30>

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
2.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
4.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
□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(임시시장의 개설 등)

-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·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□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

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

□ 민법 제 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

-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
-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

□ 민법 제394조(손해배상의 방법)

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.

□ 민법 396조(과실상계)

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

□ 민법 제399조(손해배상자의 대위)

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

□ 민법 제763조(준용규정)

제393조, 제394조, 제396조,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.

소관 실 · 과		과학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김 우 춘
	담 당	유 경 숙
	담 당 자	손 수 연 (480-6183)